

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]

해양재난구조대원 신분증(제14조제1항 관련)

(앞면)

(뒷면)

해양재난구조대원증

사진

(35mm×45mm)

성 명



○○○해양재난구조대

발급번호

소속:

직위:

성명: 분야:

생년월일:

발급 연월일

발급기관장 (인)

발급기관 전화번호

구분	내용
재질	신분증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, 재질은 폴리염화비닐(PVC) 카드로 한다.
제작 양식	- 신분증의 크기는 가로 54mm × 세로 85.6mm로 한다. - 앞면의 성명 아래에는 해양재난구조대 표지(가로 20mm × 세로 17mm)를 인쇄한다. - 신분증의 사진은 해양재난구조대원 지원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크기는 가로 35mm × 세로 45mm로 한다.
관리	- 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신분증이 오염·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. - 해양재난구조대원에서 해촉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납해야 한다. - 뒷면의 직위란은 대장·부대장·부장·반장·반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